www.scourt.go.kr
열람출력용바코드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9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3재나20007 기타(금전)

원고(재심원고), 항소인

임그루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~3 다세대주택 에이(a)동 103호

피고(재심피고), 피항소인

케이티노동조합

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본사

대표자 정윤모
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7. 13. 선고 2009가합9702 판결

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재나495 판결

변 론 종 결 2013. 9. 4.

판 결 선 고 2013. 10. 4.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www.scourt.go.kr
음성출력용바코드

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

재심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. 피고(재심피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재심원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20,000,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재심대상판결로 이 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재나495 판결을 삼고 있으나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는, 제1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 2011. 1. 21. 선고 2010나73583호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이다.

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0나73583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원 2011재나49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2다15435호 상고하였으나 2012. 4. 26. 상고가 기각되자, 다시 동일한 재심사유로 2012. 5. 17. 이 법원 2012재나495호로 위 2010나73583 판결 및 위 2011재나49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 2012다1083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. 2. 15. 상고가 기각되자 다시 2013. 3. 7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www.scourt.go.kr
문서출력용바코드

재판장 판사 윤성근 윤 성 근

판사 문정일 문 정 일

판사 구자헌 구 자 헌

www.scourt.go.kr
위변조 방지용 바코드

정본입니다.

2013. 10. 15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김치호 (인)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(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